
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

■ 사업수행능력

평가 항목	배 점	세 부 평 가 방 법																								
가. 참여기술인	40	○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후 평균점수 산정																								
(1) 등급	20	○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특급기술자</td> <td>고급기술자</td> <td>중급기술자</td> <td>초급기술자</td> </tr> <tr> <td>20</td> <td>16</td> <td>12</td> <td>8</td> </tr> </table>	특급기술자	고급기술자	중급기술자	초급기술자	20	16	12	8																
특급기술자	고급기술자	중급기술자	초급기술자																							
20	16	12	8																							
(2) 실적	20	○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) ○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다더라도 1건으로 인정.(현장별 1건 인정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12건 이상</td> <td>12건 미만 ~10건 이상</td> <td>10건 미만 ~8건 이상</td> <td>8건 미만 ~6건 이상</td> <td>6건 미만</td> </tr> <tr> <td>20</td> <td>16</td> <td>12</td> <td>8</td> <td>4</td> </tr> </table>	12건 이상	12건 미만 ~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	20	16	12	8	4														
12건 이상	12건 미만 ~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																						
20	16	12	8	4																						
나. 유사용역수행실적	30	○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용역 수행완료 실적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함) ○ 하나의 현장에 다수의 점검을 실시하였다더라도 1건으로 인정.(현장별 1건 인정)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10건 이상</td> <td>10건 미만 ~8건 이상</td> <td>8건 미만 ~6건 이상</td> <td>6건 미만 ~4건 이상</td> <td>4건 미만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30</td> <td>25</td> <td>20</td> <td>15</td> <td>10</td> </tr> </table>	구분	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 ~4건 이상	4건 미만	점수	30	25	20	15	10												
구분	10건 이상	10건 미만 ~8건 이상	8건 미만 ~6건 이상	6건 미만 ~4건 이상	4건 미만																					
점수	30	25	20	15	10																					
다. 신용도	10	○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<신용평가등급 기준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회사채</td> <td>A-이상</td> <td>A-미만 BBB-이상</td> <td>B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td>미제출</td> </tr> <tr> <td>기업어음</td> <td>A2-이상</td> <td>A2-미만 A3-이상</td> <td>A3-미만 B-이상</td> <td>C이하</td> <td>미제출</td> </tr> <tr> <td>기업신용</td> <td>A-이상</td> <td>A-미만 BBB-이상</td> <td>BBB-미만 B-이상</td> <td>CCC+이하</td> <td>미제출</td> </tr> <tr> <td>점수</td> <td>10</td> <td>9</td> <td>8</td> <td>7</td> <td>0</td> </tr> </table>	회사채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미제출	기업어음	A2-이상	A2-미만 A3-이상	A3-미만 B-이상	C이하	미제출	기업신용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미제출	점수	10	9	8	7	0
회사채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미제출																					
기업어음	A2-이상	A2-미만 A3-이상	A3-미만 B-이상	C이하	미제출																					
기업신용	A-이상	A-미만 BBB-이상	BBB-미만 B-이상	CCC+이하	미제출																					
점수	10	9	8	7	0																					
라. 업무중첩도	20	○ 김해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(용역중인 공사현장, 완료된 용역은 제외) - 지정건수 × -4점																								

- 1)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,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, 안전 관리에 한한다.(중복 불인정)
- 2)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,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(원본대조필 날인)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.

■ 가격 평가

평가항목	배점범위	세부기준 및 배점	비고
제안가격	100	· 예정가격 1번째 근접 : 100점	
		· 예정가격 2번째 근접 : 90점	
		· 예정가격 3번째 근접 : 80점	
		· 예정가격 4번째 근접 : 70점	
		· 예정가격 5번째 근접 : 60점	
		· 예정가격 6번째 근접 : 50점	
		· 예정가격 7번째 근접 : 40점	
		· 예정가격 8번째 근접 : 30점	
		· 예정가격 9번째이하 근접 : 20점	
총계	100	평가점수	

- 1)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,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
- 2)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: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
 -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: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(최고,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)
- 3)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
- 4)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

■ 최종평가

구분	배점기준			심사방법
	1억원 이상	1억원 미만 ~ 1천만원	1천만원 미만	
사업수행능력	60	40	20	평점=수행능력 평가점수×(60/40/20%)
가격평가	40	60	80	평점=수행가격 평가점수×(40/60/80%)
합계	100점	100점	100점	

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.